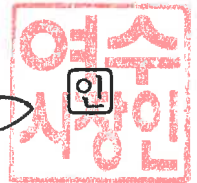


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
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2 월 27 일

여 수 시 장

조성민



여수시 조례 제2169호

붙임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169호

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택배기사, 학습지 교사”를 “택배노동자, 학습지 교사, 배달노동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이동노동자”란 대리운전기사, <u>택배기사, 학습지 교사</u>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,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택배노동자, 학습지 교사, 배달노동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개관 및 휴관) ① 쉽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</p> <p>1. <u>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</u>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개관 및 휴관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